# 직제규정

제정 1999.10.01.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8.02.01.
개정 2000.04.01.	개정 2008.03.01.	개정 2019.04.09.
개정 2001.10.01.	개정 2008.04.01.	개정 2020.01.20.
개정 2002.03.01.	개정 2008.05.01.	개정 2021.02.25.
개정 2004.03.01.	개정 2010.08.01.	개정 2021.12.17.
개정 2005.03.01.	개정 2010.11.01.	개정 2022.02.24.
개정 2006.03.01.	개정 2013.03.01.	개정 2022.04.15.
개정 2006.09.01.	개정 2013.09.01.	개정 2023.02.22.
개정 2007.01.01.	개정 2015.08.10.	개정 2023.12.29.
개정 2007.03.01.	개정 2016.02.26.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9.>
-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본 대학 「학칙」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9.>
- 제3조(기구) 본 대학의 기구 및 부서별 편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 20.>

# 제2장 총장 <개정 2019. 4. 9. 2021. 12. 17.>

- 제4조(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학교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총장 유고 시 교무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9. 4. 9,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 제4조의2(부총장) <삭제 2021. 12. 17.>

# 제3장 행정부서

- **제5조**(행정부서) ① 본 대학에 행정부서로 교무처, 기획처, 사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산학취업처를 둔다. <개정 2019. 4. 9,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 ② 제1항의 하부조직으로 팀, 센터, 단, 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9.>
- **제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원 또는 특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 ② 교무처에 하위부서로 교무팀, 교육과정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 또는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4. 9,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2023. 12. 29.>

- ③ <삭제 2021. 12. 17.>
- ④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0.><개정 2021. 2. 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 20.>]

제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 ② 기획처에 하위부서로 기획팀, 성과관리센터를 두며, 팀장 또는 센터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2023. 2. 22.>
-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0.>

[제목개정 2020. 1. 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 20.>]

[제24조에서 이동, 제7조와 통합 <2021. 12. 17.>]

제8조(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 ② 사무처에 하위부서로 총무팀, 자산팀, 정보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기술직 포함)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4. 9, 2020. 1. 20, 2021. 12, 17, 2023. 12, 29.>
-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1. 20.>]

제9조(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 ② 학생처에 하위부서로 학생서비스팀, 학생상담센터, 장애다문화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단을 두며, 단장은 교원 또는 사회봉사 관련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로 보하고, 센터장 또는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4. 9,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 20.>]

[제23조에서 이동, 제9조와 통합 <2021. 12. 17.>]

- **제10조**(입학홍보처) ① 입학홍보처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20, 1, 20.><개정 2021, 12, 17.>
  - ② 입학홍보처에 하위부서로 입시홍보팀, 국제교류센터, 한국어학당,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두며, 원장·센터장 또는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4. 9,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2023. 12. 29.>
  -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0.>

[전문개정 2020. 1. 20.]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 20.>]

[제목개정 2021. 12. 17.]

제11조(산학취업처) ① 산학취업처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② 산학취업처에 하위부서로 산학협력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창업지원팀, 식품분석연구센터를 두며, 센터장 또는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2023. 2. 22.>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목개정 2021. 12. 17.]

#### 제4장 학과 <개정 2021. 12. 17.>

- **제12조**(학과) ① 본 대학에 「학칙」에 따른 학과를 둔다. <개정 2020. 1. 20, 2021. 12. 17.>
  - ② <삭제 2021. 12. 17.>
  - ③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 ④ 학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로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9,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 제5장 부속 · 부설기관

- **제13조**(도서관) ① 도서관의 관장은 교원, 또는 특임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2023. 12. 29.>
  - ② 도서관에 하위부서로 학술정보팀을 두며,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기술직 포함)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학술정보팀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17, 2023. 12. 29.>
  -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2023, 12, 29,]

- 제14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교원 또는 특임교원으로 보한다.
  - <개정 2021. 12. 17.>
  - ② 평생교육원에 하위부서로 평생교육팀을 두며,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17.>
  - ③ 제2항에 따른 하위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7.>
  - ④ <삭제 2021. 12. 17.>

[본조신설 2021. 2. 25.]

제15조(보육교사교육원) <삭제 2020. 1. 20.>

**제16조**(아이웰센터) [종전 제1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 20.>]

- 제17조(학생미디어센터) ① 주간은 교원으로 보한다.
  - ② 학생미디어센터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 제18조(부설연구소) ① 부설연구소의 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 ② 부설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산학협력단

- 제19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하고, 산학취업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0, 2021. 2. 25, 2021. 12. 17.>
  - ③ 산학협력단에 하위부서로 기업협업센터(ICC)를 둔다. <신설 2023. 12. 29.>
  - ④ 산학협력단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4. 9.>
- 제20조(창업보육센터) <삭제 2021. 12. 17.>
- 제21조(인간성장발달교육센터) <삭제 2021. 2. 25.>
- 제22조(외부수탁기관) ① 외부수탁기관의 센터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한다.
  - ② 외부수탁기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총장 직속기구

제23조(사회봉사단) <삭제 2021. 12. 17.>

[종전 제23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17.>]

제23조의2(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인권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2. 2. 24, 2022. 4. 15, 2023. 2. 22, 2023. 12. 29.>

② 제1항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7.]

제24조(교육품질평가단) <삭제 2021. 12. 17.>

[종전 제2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17.>]

- 제24조의2(국책사업본부) <삭제 2023. 12. 29.>
- 제25조(LINC 3.0 사업단) <삭제 2023. 12. 29.>
- 제26조(디지털캠퍼스 추진단) <삭제 2023. 12. 29.>
- 제27조(평생교육 추진단) <삭제 2023. 12. 29.>
- **제28조**(인권센터) ① 인권센터장은 전문성을 갖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보한다. <개정 2022. 4. 15.>
  - ② 인권센터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7.]

- 제29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단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 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하위부서로 사업전담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22, 4, 15.]

제30조(HiVE센터) <삭제 2023. 12. 29.>

제31조(성인학습지원센터) <삭제 2023. 12. 29.>

제32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삭제 2023. 12. 29.>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아이웰센터는 폐지하되, '22년 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 연장 운영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패션디자인실용화센터는 폐지하되, '22회계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 연장 운영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학기구표 <개정 2022. 2. 24, 2022. 4. 15, 2023. 2. 22, 2023. 12. 29.>

